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32512(본소), 2013다32529(반소),
2013다3253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부당이득금 · 부당이득금반환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32512(본소), 2013다32529(반소),
2013다3253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1나96897(본소), 2011나96903(반소),
2012나34889(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9. 28 선고 2010가합13424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1. B

2. C

3. D

4. E

5. F

6. I

7. K

8. L

9. M

10. N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판결 선고 2015. 10. 15.

2012나34889(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동의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동의서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어떠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공정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2004. 4.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 정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에 관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등으로 무효 부분에 관한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표준임대료 산정요소로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화재보험료와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의 부당이득 액수와 원고들 중 일부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당이득 액수를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효행위의 추인, 구 임대주택 법령의 해석, 부당이득 반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